

연 세 대 학 교

사회과학대학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

우)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 전화 (02) 2123- 3643,5,3652 /담당자: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문서번호 : 6-02

작성일자 : 2002. 6.18

발신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

수신 : 이명상

참조 :

선별			지시	
일 자			결재	
접 시간			·	
번호			공	
처 리 과			람	
담 당 자				

제목 : 사회과학대학 성폭력 사건에 관한 건

1. 본문은 가해자 이명상씨가 대책위원회로 보낸 문서에 대한 사회과학대학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답변입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가해자의 요구 사항에 대해 답변할 의무나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보다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해 대책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보내드립니다.

2. 이번 사건은 새터에서 일어난 성폭력에 대한 신고 사항으로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규정에 따라 총여학생회 부총여학생회장, 가해자 소속 단위인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부학생회장,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신고인과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신고인 총 4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1 본 사회과학대학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에 기반하여 새터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해결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피해자의 말만 듣고 사건을 해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폭력 사건의 논의 테이블은 피해자의 말만 듣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과 양쪽의 진술을 듣고 상황을 정리한 후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는 다른 여타의 범죄와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밀히 일어난다는 것과 증인이 거의 없다는 것, 강간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별 생각없이 내뱉은 말이 피해자에게는 큰 고통으로 다가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또한 가해자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기억하는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피해자가 기억하는 피해 사실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본 사건에 대해 가해자 역시 물증이 아닌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충격으로 남았거나 상처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할 수 밖에 없으며 피해자가 새터에서 돌아온 후 여러 차례 말과 글을 통해 남긴 정황들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피해 사실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지금도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사건을 새터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3-2 피해자의 진술서와 신고로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준)을 구성하고 가해자에게 이 사건이 접수되었음을 공지하며 가해자와 2차 가해자 2인에게 진술서를 받아 사회과학대학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규정상 대책위원회는 최소 3인에서 최대 6인까지로 구성할 수 있으며 피해자나 신고인은 본인의 동의여부에 따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대책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으며 대책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 가해자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가해자 면담과 피해자 진술을 가지고 사건에 대한 처리와 징계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본 대책위원회가 가해자를 만난 것은 대책위원회 자리가 아니라 대책위원들의 가해자 면담 자리였음은 1차 면담에서 미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문서의 많은 부분이 '가해자가 대책위원회에 들어갔다'라고 표기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가해자 면담의 위상을 숙지하지 못하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본 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이 신고되었을 때 명백하게 새터자리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가해자 면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1차 면담으로 확인되지 않은, 성폭력 사건 정황 중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대책위원회에서 다시 피해자와 가해자, 2차 가해자의 진술을 받아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가해자 면담을 다시 하였습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충분히 자신의 입장에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하며, 면담자리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판단하여 사건을 징계하는 것은 대책위원회가 할 역할이자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 사건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범죄에서도 가해자와 합의하여 사건의 최종 결정을 하는 경우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5. 성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 연루된 많은 이들이 사건 후유증으로 인해 심리적, 정신적 괴로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대책위원회는 사건의 특성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을 해결해야 할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본 대책위원회 역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가해자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가해자가 인정하고 있지 않은 '꿀꺽' 발언에 대해 피해자가 거짓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그 사건을 신고하여 피해자가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기억을 조작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기억하는 피해 사실이 있고, 가해자는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 대책위원회는 피해자의 입장을 수용하여 가해자에게 '자신은 기억이 없지만 피해자는 기억하고 있는 피해사실에 대해 사과할 것'을 징계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해자가 '생각해보겠다'고 한 것부터 대책위원회의 징계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위원회는 진심이 담긴 사과문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가해자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2일의 여유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대책위원회가 판단하기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대책위원회와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과문 작성 시간을 늦추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할 사람이 바로 가해자라고 판단하며, 가해자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가해로 인해 일어난 일인만큼 그로 인해 자신에게 발생한 피해는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위원회는 사건이 지연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징계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6. 대책위원 전원은 대책위원회 자리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여 입장을 정리하여 가해자 면담을 진행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모든 말은 대책위원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대책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대책위원회는 가해자와의 면담 자리에서 가해자의 입장을 들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위원회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2, 3차 면담에서는 1차와 똑같은 이야기들도 계속 나왔고 그에 대해서는 대책위원회에서 미리 논의하여 정리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또한 편파성이라는 말은 어느 한 쪽에 치우쳐 판단을 한다는 뜻으로 이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대책위원이 가해자 면담 자리에서 말을 더 많이 한 것이 대책위원회의 '편파성'이라고 지적당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어느 누구도 대책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7. 대책위원회 구성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특정 대책위원을 교체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원하는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가해자가 대책위원회를 재구성하라는 요구에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원하지도 않습니다. 사건을 책임지고, 징계를 받아야 할 가해자가 대책위원을 구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책위원회의 위상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부학생회장을 학생회장으로 교체하라는 요구는 마치 부학생회장의 대표성이나 자질을 의심하는 말로 여겨집니다. 가해자가 보기에 대책위원회가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본 대책위원회는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대책위원회를 꾸려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가해자 역시 신뢰를 가지고 대책위원회와 만나고 사건 해결을 위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대책위원 개개인의 입장을 듣고 싶다는 의견 또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의견은 대책위원회의 입장으로 정리되어 나간 것이며, 대책위원 개개인은 대책위원회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대책위는 단위를 대표하여 꾸린 공적인 기구이지 대책위원을 개개인으로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되지 않은 대책위원 개인의 이야기는 효력을 가지지도 않으며, 그것을 밝혀야 할 이유도 의무도 없습니다.

모든 대책위원들이 가해자의 문서를 보고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책위원회로 보내지는 모든 문건과 의견은 대책위원들이 논의하고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 사용됨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마치 본 대책위원회가 가해자 의견에 대해 무시하거나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대책위원회가 이 문건을 읽었는지 검증하려는 태도로 보입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최대한 성실하게 가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해자 면담을 해 온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바에 대해 가해자가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본 대책위원회는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8. 여학생처나 여성부에 제소하는 것은 본 대책위원회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다른 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이 사건을 어떻게 여학생처나 여성부에 제소할 것인지 본 대책위원회는 이해가 되지 않으며, 다만 피해자 동의 없이 이 사건을 다른 곳에 공개하면 그것 역시나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피해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